

대학원 도예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도예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석·박사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도예학과 소속 교수들은 도예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도예학과의 교육과정은 편성 요청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하며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편성한다.

제5조 (과목개설) 과목개설은 도예학과 교육과정 편성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 ① 학칙에 의거하여 전임교원은 학부와 대학원 수업에 해당 직급에 맞는 책임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② 전임교원의 수업 배정은 교수회의를 통하여 협의 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간강사는 시간강사 위촉규정에 의거하여 학기별 추천기간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에 의거하여 1학기 말(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종합학력시험 면제 대상은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하며 면제기준은 아래와 같다. 석사과정은 면제 대상 해당없음.

-면제기준

- ① 소논문 게재 편수 : 1편
- ② 학술지 등급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기초조형학회, 한국화훼조형학회, 한국도자학회 등)
- ③ 입학 후, 본 논문심사 전까지 게재된 논문(게재확정서 포함)을 면제기준으로 인정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 ①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은 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 ②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③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전임 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음.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
 2. 박사학위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전임 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음.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
- ④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 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한다.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독어, 불어, 중어, 일어, 한문, 노어, 서반아어 언어권도 인정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도예학과의 석사학위 과정은 학위논문 제출을 필수로 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도예학과에서는 석사학위 취득 방안을 학위논문 제출을 필수로 하므로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이 불가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그에 앞서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예비발표)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앞서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학위청구논문에 대해서는 예비발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비발표에는 재학생들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제 15조(학위 청구전 관련)

① 석사·박사과정 모든 전공의 재학생은 학위 청구전(개인전 포함) 1회 진행 후 본 논문심사를 받는다. 학위 청구전(개인전 포함)은 교내가 아닌 외부 갤러리에서 1인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위 청구전은 본인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작품으로 진행한다.

제16조 (논문대체)

석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의 대체로 학위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지도교수의 판단 하에 기존의 학위논문으로 진행 가능

-학위작품 작성 시 기본 규정

① 학위작품으로 학위 취득시, 작품제작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학위작품 제작보고서”란 전공과 관련한 개인의 창작물에 관한 내용을 기재

한 보고서로, 작품에 대한 제작 의도, 과정, 결과, 전시 등에 관한 내용(사진 필수 포함)을 포함하는 보고서로 작성 양식은 학위논문과 같으나 내용이 더 간결하다. 결과물은 학위논문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고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도서관)에 제출하지 않는다.

③ 작품제작보고서는 A4사이즈로 제본 제작되어야 하며, 작품은 20점 이상, 작품 사진은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작가노트와 지도교수의 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학과로 학위작품 제작보고서(작품사진 포함 필수) 1부와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이는 학과 사무실에서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한다.

제 17조(박사학위논문 관련)

①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신청 한 학기 전에 논문내용의 80%이상을 작성하여 학과내부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예심1’이라 칭한다.

② ‘예심1’의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논문심사신청 예정자는 심사신청 한 학기 전에 논문내용의 80%이상을 작성하여 ‘예심1’을 시행한다.

2. ‘예심1’은 지도교수와 지도위원 2인(내부)을 선정하여 비공개로 시행한다.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3. 연구논문, 작품논문을 작성하는 자는 학회지에 소논문 1편을 게재하고 학위 청구전을 1회 진행한 후 학위논문 1편을 작성한다.

4. 고찰논문을 작성하는 자는 학회지에 소논문 2편을 게재하고 학위논문 1편을 작성한다.

5. 위 3~4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2017-2학기 논문심사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지도교수와 협의 후 진행한다.

6. 학위논문의 80%이상 작성 후 ‘예심1’에 통과한 자는 통과한 다음 학기에 학교에 논문심사를 신청하여 학위논문심사를 받는다.

③ 박사과정은 수료 직후 학기인 5학기에도 학위 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8조(외국인 논문심사신청) 논문심사 신청시, 한국어 TOPIK 성적표를 함께 제출하며, 이는 학과사무실에서 3년간 보관한다.

-2019학년도 이전 입학 학생은 한국어 TOPIK 3등급 제출

-2019학년도 이후 입학 학생은 한국어 TOPIK 4등급 제출

제 19조(논문심사위원)

- ①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 학칙에 명시되어있는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다.
- ② 지도교수가 지도학생(박사과정)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해당 외부 전문가를 논문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 20조 (회의의 목적) 도예학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는 학과의 발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 21조 (회의의 구성원) 도예학과 회의는 주임교수를 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전임교원, 서기는 학과 조교로 구성한다.

제 22조 (회의의 소집)

- ① 회의 소집 3일전에 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에게 공지한다. 단, 중대한 안건이 논의되어야 할 경우 의장(주임교수)의 긴급 소집을 통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학과에 소속된 위원 중 2인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주임교수)과 논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결과)

- ① 도예학과의 회의 결과는 전임교원 전원의 동의를 얻고 시행하며 기록으로 남겨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 ② 회의의 결과는 회의 종료 이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다.
- ③ 회의 결과는 도예학과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에게 공지하여 모든 구성원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